- (나) 부득이한 경우 화기작업 전 충분한 환기 실시, 불티 등이 우레탄폼 표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적정한 차폐시설 설치
- (2) 우레탄 폼을 사용, 시공하기 전, 중, 후에 현장 내 모든 협력업체와 다음과 같은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  - (가)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을 확인하고, 작업중에는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.
  - (나) 우레탄 폼에 의한 화재특성,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협의하는 절차 구축
  - (다) 작업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피난 교육과 훈련 실시
- (3)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은 화기와 철저히 이격하여 사용하고 소화 기구(층고가 높은 장소에는 압력이 높은 중형 소화기) 비치 등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4) 용접 등 화기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를 위하여 비산방지 덮개, 용접 방화포 등 불 꽃, 불티, 고온 등을 차폐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5) 피복이 손상된 전기 케이블은 교체 또는 절연조치하고 단자부는 이완에 의한 발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임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.
- (6) 우레탄 분사기를 포함하여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전동기계기구는 부하 측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7) 밀폐된 냉동창고 등은 가스 및 부유물이 체류하지 않도록 작업 전·후에 철저히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(8) 우레탄 폼 시공 작업장소에 물질 특성,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물질안전 보건자료(MSDS)를 비치하고 "경고/주의"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9) 폴리 우레탄 폼의 안전보건작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KOSHA GUIDE F-3-2014(경질폴리우레탄폼 취급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) 및 KOSHA GUIDE G-114-2014(폴리우레탄폼, 스티로폼 등 보온재 주변의 용접, 용단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)의 규정에 따른다.